

JS한마음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설치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JS한마음요양원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본 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JS한마음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JS한마음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가. 관리책임자: 시설장, 사무국장

나. 운영담당자: 사회복지사 중 팀장, 간호조무사 중 팀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선임요양보호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JS한마음요양원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관리책임자는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카메라 대수 및 위치 : JS한마음요양원 CCTV는 총 3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25대 (25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11대: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3대, 복도 1대,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3대, 작업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2대, 식당1대

다만,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운영 Q&A(2023년 6월 1일)에 따라 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은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이용 시간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잠금장치를 하여 입소자 출입 제한으로 운영한다면, 운영시간 외에는 동작감지기능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입소자의 주 생활·이용장소가 아닌 현관은 24시간 동작감지기능 설정이 가능하다.

②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A4사이즈 규격의 안내판을 시설 출입구 및 주변 경계부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 중 1번은 모니터링 권한이 없는 종사자 또는 일반인이 볼 수 없도록 조치(화면 끄, 가림막 설치 등)하여 지정된 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하며, 2,3번은 잠금장치 보관함에 설치하고 영상정보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JS한마음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및 촬영범위 : HD급(130만 화소), 본 요양원 내
2.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 CCTV 운영 장비에 있는 DVR
6. 영상정보 열람 장소 : CCTV 운영 장비 설치공간
7. 영상정보 삭제주기 : 60일 경과 시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운영자의 금지행위 :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핸드폰 등의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영상정보 열람가능사유 :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 할 목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

가.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 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 제 15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JS한마음요양원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